

**●환경부고시제2017-58호**

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항에 따른 「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」(환경부고시 제2014-256호, 2014.12.31)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·고시합니다.

2017년 3월 21일

환 경 부 장 관

「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

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 등) ① 제5조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이 규정의 제3장에서 정한 작성기준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17호서식까지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.

부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●환경부고시제2017-59호**

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른 「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」(환경부고시 제2016-76호, 2016.4.7)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·고시합니다.

2017년 3월 21일

환 경 부 장 관

「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

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3(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기준 등) ① 제5조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이 규정의 제3장에서 정한 작성기준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16호서식까지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.

부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●국토교통부고시제2017-163호**

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

「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3월 21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

○ 명 칭 : 한국토지주택공사

○ 소재지 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